

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

최찬환 / 서울 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지난 6월21일 94년도 건설진흥축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 등 12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산업 발전 대강연회」에서 제1주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에 대한 강연에서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은 「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유일한 산업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모방과 자기것의 보편화를 통한 1등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면서 「이에따라 기술집약형인 에너지 및 교통, 빌딩, 통신 등에 대한 관심을 건설업계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주제 「개방화시대 건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이남주 신화건설 회장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주패턴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거래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근로자 면세점 인상 등 외교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3주제 「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에 대한 강연에서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축설계개방에 대비 설계사무소의 전문화와 건축설계 체제의 확립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제중 최찬환 서울 시립대 교수의 「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1. 서론

우리나라 건축계는 1960년 이후의 공업화, 도시화, 고도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경제,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실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제치하, 해방과 사회적 혼란, 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등으로 어려운 여건을 겪었고 60년대초에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93년에는 1인당 GNP가 7400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약 30년 동안 100배 이상에 해당되는 괄목 할 만한 성장을 했다.

더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해외건설의 진출 경험은 1970년대 중반의 중동건설붐을 맞게되어 국가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원유가 하락과 함께 중동에서 건설의 특수붐이 퇴조하면서 우리나라 해외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은 반면 200만호 주택 건설정책은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축설계부문은 기능공의 장인 정신으로 전수되어오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며 일제시대 조선대서사 취제규칙(朝鮮代書士取帝規則)에 의거하여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건축대서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이 제정, 공포되어 종전 업무수행자를 인정하는 등으로 건축사제도를 확립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업역으로 규정하는 법적 보호장치와 전문화를 기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물량도 대폭 늘어났으며 건축사업부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축계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로 업역을 분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도록 오랫동안 시행하여 왔다.

그간 국내건설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막론하고 거의 보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시공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대외 경쟁력을 가진 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외 지향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설계 용역 부문은 창의적 디자인, 기술수준, 자본 등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열악한 실정일 뿐 아니라 영세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영용역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외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영세 설계사무소가 난립하여 건설시공부분과는 반대로 외국에 진출하기는 커녕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국내 대형 건축물의 설계를 맡게되어 국내설계 용역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는 수세(守勢)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물결과 싸워야하고 국내적으로는 고유업무이외에 행정위탁업무의 확대, 감독 및 처벌의 강화, 지나친 행정규제와 함께 까다롭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의 대행, 건축사의 자격강화, 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족, 잣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 통제된 저가의 보수요율,

과당한 수주경쟁과 덤펑, 이로인한 부실설계와 설계의 질적수준저하, 국민들의 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는 등 복잡하게 얹혀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여건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빛어지고 있는 공사감리 업무의 분장, 종합건설업 면허로 설계권을 요구하는 건설회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논쟁 등 건축설계업이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여러 여건과 어려운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축설계가 국제화, 개방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건축설계의 개념과 현황

건축활동은 크게 기획(Programming), 계획(Planning), 설계(Design), 시공(Construction)의 4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기획은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시장분석, 사업의 내용과 규모, 투자 등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것을 다루며 건축주 또는 별도의 전문업체가 담당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계자와 시공자등 각 전문업역의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전문업자(General Contractor)가 담당할 수도 있다.

계획은 기획을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건축주와 설계자가 상호협의하에 진행하는 설계의 전 단계 작업이다.

설계는 계획내용을 형태화시키는

건축활동은 크게 기획(Programming), 계획(Planning), 설계(Design), 시공(Construction)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획은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 ② 계획은 기획을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꿈

③ 설계는 계획 내용을 형태화시키는 작업 ④ 시공은 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기술경쟁력을 위주로 한다.

2

**공사감리는 건축
주와 시공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완적인 과정으
로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성격
을 구분하며, 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시공감리는
건설회사가 하되
설계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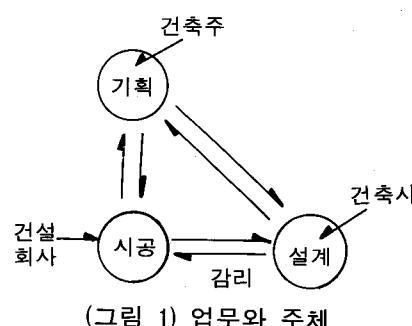
작업이며 이는 디자인이라는 조형 예술적 창작활동과 기술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시공은 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기술경제성을 위주로 한다.

위에서와 같이 건축물을 만드는 4단계를 고찰하여 보았을 때 각 단계가 업무성격의 특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계획을 기획과 설계의 중간과정으로 본다면 기획-설계-시공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용역 수행자제도가 발달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면 건축주가 외부의 전문연구 업체에서부터 기획업무를 발주하든지 건축주 스스로가 기획을 담당하게 된다.

건축설계는 건축사 자격면허를 가지고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법으로 그 업역을 보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에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기획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와 맞추어 시공을 해야한다. 즉, 기획 또는 계획은 설계를 제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공은 설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설계와 시공은 건축주로 부터 별도로 발주를 받아 시행되는 별개의 업무이며 건축주가 비전문가로서 설계된 도서에 따라 시공을 발주할 경우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에게 설계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보완적 설계를 하거나 설계의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공자의 의견을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된다.

공사감리는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완적인 과정으로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설계감리는 설계자가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시공감리는 시공관리의 일부로서 건설회사가 자주감리를 하고 설계자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역할분담과 함께 업무구분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관계에 따라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어 설계 및 설계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시공 및 시공관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회사가 전담하며 시공감리는 건설회사가 하되 설계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건축활동의 본질

건축은 문화적요소로서의 조형에

3

설계라는 조형예술의 창작이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라는 점을 추구한다면, 시공은 주어진 도면을 건립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과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와 시공을 건축활동의 한울타리 안에서도 당연히 독립된 다른 성격의 업역과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술, 자본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을 위주로하고 있다.

설계라는 조형예술의 창작이 “무엇을” 그리고 “어떤것을” 만들것인가라는 점을 추구한다면, 시공은 주어진 도면을 건립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과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와 시공을 건축활동의 한울타리 안에서도 당연히 독립된 다른 성격의 업역과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업역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계와 시공의 업역 차이

설계	조형예술성, 작가의 창의적 정신과 Design Oriented, 작품성 추구, 공공성의 강조
시공	기술성, 경제성 자본과 기술중심의 Engineering Oriented로 이윤 추구의 상업성 강조

그러므로 현행의 업역구분이 상호의 업역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도 마찬 가지이다.

2) 설계와 시공업무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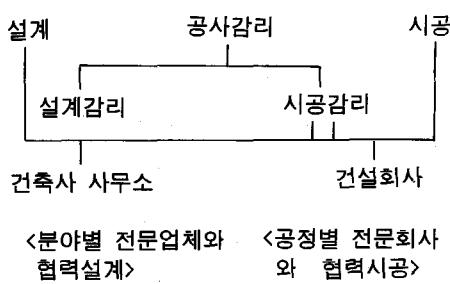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기까지는 「설계-공사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건설과정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담당과 그 역할이 부여된다. 또한 설계라는 창작과정도 여러과정을 거치며 건축외적인 여러 분야의 협력과 분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설계

술성을 주로하는 디자인과 경제성을 위주로한 기술과 자본이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 성격, 내용에 따라 그 비중의 경량은 있겠지만 결코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아 조형예술성은 디자인이라는 설계작업을 통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며 기술경제성은 시공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취급되어진다. 따라서 설계업무를 주도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조형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창작활동이 주가 되는 반면 건설회사는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이익추구의 경제성논리에 의거 시공기술에 치중하게 마련이어서 각기 특성을 가진 설계와 시공이 건축활동의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가지면서 상호 보완하고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작활동은 자본과 규모, 조직의 논리보다는 작가개인의 정신적 작업과 능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보장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여 그와같은 분위기와 여건위에서 성숙될 수 있다. 물론 전문화 고도화된 오늘날, 개인작가의 독자적인 활동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에 관련된 여러분야의 협동조직과 여러 작가의 협업적 공동작업이 수반될 때도 많지만 조형예술을 창작하는 근원은 작가의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활동이며 이를 살릴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예술활동의 예를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며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한편 건설회사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기업정신과 조직으로 시공관리

4

시공은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인력, 자금, 공정, 자재 등의 시공관리와 품질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공정별 전문하청업체를 거느리고 현장을 통제관리한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가교적 역할로서 공사감리라는 업무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가교적 역할로서 공사감리라는 업무가 필요하다.

과정에서도 구조, 설비, 조경, 토목 등 여러 전문분야와의 협력설계가 필요하다. 시공은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인력, 자금, 공정, 자재 등의 시공관리와 품질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공정별 전문하청업체를 거느리고 현장을 통제관리한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가교적 역할로서 공사감리라는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그 설계의도와 설계기술을 시공과정에 전달하고 설계의 현장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하며 시공업자는 시공관리에 대한 자주적 시공감리로 설계에 필요한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설계에 전달하는 상호 기술교류와 협력 그리고 상호 조정과 견제를 하게된다.



(그림 2) 설계와 시공업무의 성격 구분

3) 건축설계사무소 현황

1994년 초를 기준으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4,000여명 단독건축사사무소는 1,900여개, 종합 건축사사무소 600여개사에 건축사 2,100여명이며 93년을 기준으로 설계건수 146,171건이며 면적은 124,107,497M²이며 건축사 1인당 평균 건수는 34.8건, 면적은

<표 2> 설계, 시공의 업무 성격

구 분	업 무	타분야와의 협력
설 계	기획, 계획, 기 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외적인 계, 건축외적인 설계, 설계감리	설계의도와 설계 기술을 시공과정에 전달, 어려전문분야와 협력(구조, 설비, 조경, 토목 등)
시 공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건립-시공관리, 품질관리, 현장에 대한 통제 관리, 시공감리	시공관리에 대한 자주적 시공감리로 설계에 필요 한 시공기술개발, 새로운 기술을 설계에 전달

29,563.48M²로 되어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90여개사로 되어 공공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용역 시장 규모가 연간 8,000억 1조 2,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개 설계사무소의 연간 평균 수주액이 2억 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도별 설계물량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당경쟁으로 보수요율보다 낮은 설계비로 덤평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정확한 건축설계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4)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제휴

설계사무소의 설계와 건설회사의 시공은 그 업무성격상 뚜렷이 구분되고 있어 상호 보완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각기 예속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 업무수행을 하면서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상호 협조적 동반관계가

5

설계와 시공은 경쟁적 상대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그리고 공생공조의 관계를 가진 협력자이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제휴와 협력(Partnership, Joint venture, Consortium)등은 업무의 수직계열상 당연 하겠지만 최근에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적 상대자인 건설회사 상호간이 필요에 의해 제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특이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말레이지아 최대 최고의 복합빌딩인 KLCC쌍둥이 빌딩을 삼성건설과 극동건설이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싱가폴의 Suntec City 프로젝트에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공동수주하는 등 한국업체간의 공동수주가 있는가 하면 외국 건설회사와의 제휴, 현지국가의 건설업체와의 제휴 등 다양하게 결합하고 있다. 대형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면 위험도 크기 때문에 국내업체간의 수평적인 합작과 수직적으로는 하청형태로 공동참여함으로써 위험의 분산, 책임시공의 분위기 확보, 과당경쟁의 지양, 업체의 공존공영 등을 도모하고 있다.

치열한 수주경쟁에서는 상황에 따라 경쟁자와 제휴하여 동반자로 공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건설회사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의 여러 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값진경험과 많은 실적과 명성 그리

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화의 감각을 익혔을 뿐 아니라 자금과 조직력을 십분활용하여 해외시장개척에 유리한데 비해 설계분야는 여러면에서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 건설시장 수주경향이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의 보다 긴밀한 협력 동반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설계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을 생명으로 하는 시공의 전위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외국설계에 경험이나 실적이 있고 진출을 희망하는 설계사무소가 집합하여 정보, 인력 등을 공유하여 기술축적을 하고 이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특성화, 방안이 강구됨직하다.

또하나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포 건축가와 제휴하여 상호정보와 기술교류를 증대하면서 해외시장의 개척과 함께 국내시장을 보다 유리한 방향에서 보호적 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종합건설업 면허로서 건설회사가 설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업체가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기 업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관련법으로 이를 보호하여 왔다. 이는 오랜기간에 걸쳐

6

건설회사는 건설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설계조직을 두거나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설계권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설계업무를 설계사무소에서 하도급관리하는 형식으로 관광하겠다는 생각이 농후하다.

이루어진 업역의 구분이며 그에 따라 건축분야가 상호협력과 보완 그리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설계용역업 분야도 다양한 업종의 전문설계사무소로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설회사도 엔지니어링 기술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시공회사의 형태를 벗어나 여러분야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하고 기술경쟁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고도의 종합기술을 요하는 공장이나 특수 공법의 공사 등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 사무소는 소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건축조형예술을 창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설계조직을 두거나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설계권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설계업무를 설계사무소에 하도급관리하는 형식으로 관광하겠다는 생각이 농후하다.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설계를 본연의 주업무인 시공에 연결시키고 순공사발주가 아닌 투자를 동반한 기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기획, 개발형공사발주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가 시공발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공기술의 설계에의 환류, 설계 시공의 일괄발주에 대한 대비, 자본과 조직 그리고 경영으로 대형화하여 개방화에 대비 자유경쟁의 원리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설계사무소는 건축의 문화예술성, 디자인 설계와 감리 그리고 시공의 특성차이나 역할 분담이 상호보완 및 견제, 독점적 지배에 의한 수직계열화 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협력, 중소기업업역보호, 자체에서 설계인력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과제에 따라 협력자를 외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 설계와 시공의 독자성 확보, 설계가 건설공사의 수주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업역의 분리와 보호의 당연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의一面에는 상호이해의 부족과 이기주의 견해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 경쟁자가 아닌 상호공존공생하는 협력 동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회사가 영세규모의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능력을 믿지 못하는 깊은 불신감이 있는가 하면 설계사무소는 대자본을 가진 건설회사가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적 입장에서 자본과 조직으로 공략하게 될 때 도산하게 되거나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건설회사는 설계능력도 없이 건축허가를 대행하는 소위 “허가방”이라 불리는 곳을 설계사무소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설계사무소는 자본지배와 이익추구의 기업활동을 하는 건설회사가 설계업무에 경쟁적 상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과 설계가 시공의 하도급

관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기본 논리를 앞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하게는 덤펑과 부실시공을 일삼는 무등록 시공업자인 “집장사”의 행태와도 연결시키기도 한다.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는 상호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과 업종의 전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쟁 그리고 단절의 범위를 넘어선 반목으로 까지 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자 고유업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상호보완하며 이해와 신뢰속에 공존공생하여야 한다. 건축설계는 창의와 예술이라는 경제활동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고집할 수 없다.

3. 건축설계의 환경변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국제화, 개방화, 복합화, 다원화의 시대이며 건축설계분야도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전문화, 고도화하여 기술과 경영에서 새로운 준비와 각오를 새로 하지 않으면 건축설계부문도 국제경쟁력을 잃게 된다.

건축설계용역업도 96년에 민간부문이 97년부터는 공공부문이 개방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수준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지며 생활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건축사업무인 설계 및 공사감리의 강화, 보수요율의 조정, 지방자치제와 권한 위임, 규제완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건축설계업은 설계물량이 소규모이고 인 허가를 받

아야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가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일부 대형건축물이나 특수한 건축물은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기본설계를 하고 국내 설계사무소와 제휴하여 실시 설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예도 있다.

건축설계업의 개방화는 곧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건축설계업의 현황진단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제화, 개방화는 건축설계부문에서 전문화,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관행화하여 왔던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가 일괄발주(Turnkey Base)로 되는가 하면 설계된 부분이라도 공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도 저렴하게 하도록 시공자가 그 동안의 시공경험과 기술개발을 하면서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처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연구검토하는 Value Engineering의 수주방법, 충분한 설계시간을 가지지 못하면서 조기 공사발주를 하게 될 때 설계자가 대략적인 개념설계(Skematic, Conceptual Design)를 하고 설계와 시공의 실력과 신용을 전제로 수주를 하는 Semi-Turnkey 방법인 FAST TRACK방법 등 다양한 발주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디자인과 기술을 기본전제로 하여 고품질의 건축물을 비용, 시간

건설회사와 설계
사무소는 상호간
에 이해하지 못하
는 불신과 업종의
전문화를 인정하
지 않는 경쟁 그
리고 단절의 범위
를 넘어선 반목으
로까지 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
다.

각자 고유업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반자
와 협력자로서 상
호보완하며 이해
와 신뢰속에 공존
공생하여야 한다.

8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건축가
와 설계조직을 가
지지 못하고 있어
서 시공에 비해
건축설계가 절름
발이가 되어 있어
건축설계 시장이
개방화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을 단축시키도록 요구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폐쇄된 국내 건설업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건축설계도 이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발빠른 변신을 해야만 무한 경쟁체제에서 자기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여건은 종래의 설계와 시공이라는 독립된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로 좁혀지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건설회사가 이를 이유로 종합건설회사(General-Contractor)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를 부르짖고 있다. 건설산업은 디자인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전략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은 우수한 설계능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명성이거나 인지도를 가진 건축가 또는 설계조직을 양성 또는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건축가와 설계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시공에 비해 건축설계가 절름발이가 되어 있어 건축설계시장이 개방화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건설회사가 국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국내 설계회사를 배제하고 외국의 유수한 설계회사와 제휴함으로써 설계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적 사고와 풍토하에서 건설회사가 건축설계용역의 수입업자가 되어 지원 육성해야 할 국내설계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건축설계가 국제무대에서 설계분야에 활약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

고 국내시장에 안주하여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국외에 진출하여 크게 번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축설계사무소가 국제 설계의 경험이나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설계의 국제화가 취약하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의 동반자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못나고 능력이 모자라도 상호 이해하고 끝까지 동반자가 되도록 감싸고 육성하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며 설계사무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키워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건축설계사무소의 문제점

국내 건축설계사무소가 대외경쟁력에서 취약한 몇 가지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시장이 영세하고 해외시장개척을 도와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 건축의 역사가 일천하고 건축문화가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불과하여 건축설계를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이 거의 없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료, 방화, 기술적 기준 등의 여러관련 코드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며 건축설계의 국제화에 무관심하거나 기술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가 건축설계의 사대주의 경향을 부추기고 조그마한 국내시장에서 과열경쟁을 일으키며 건축설계의 쇄국주의를 가져오게 된것으로 생각한다.

9

건축설계의 국제화, 개방화는 어쩔 수 없는 국면이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선진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경쟁은 설계비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재료와 공법 등이 국제화될 것으로 본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경쟁력을 상실한 설계사무소는 점차 도태하게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난립과 과열수주경쟁 우리나라 건축설계사무소는 건축사 1인이 운영하는 단독건축사 사무소가 가장 많고 3인이상의 건축사가 운영하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형태가 있으나 법적으로 최소기준인 건축사 3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한 경우는 공동운영사무실이 아닌 단독 건축사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종합형태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단독사무소와 마찬가지이다. 건축을 문화예술활동으로 본다면 건축사의 수와 직원수 등 사무소의 외형적인 규모에 따라 우열을 가누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춘 건축사가 없다면 체제와 운영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몇개의 대규모 설계사무소가 있을 뿐 대부분은 극히 소규모 설계사무소가 난립되어 있으며 직원의 실무경력이 짧고 직장이동이 많은 등으로 설계능력이 모자라고 기술개발이나 기술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으며 그나마 일부 인원은 디자인이나 기술 등 설계의 고유업무에 매달리지 못하고 수주활동, 인허가처리 등 사무소 경영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건축설계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과열 수주경쟁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있다.

셋째, 국내 건설정책의 영향과 건축행정업무의 대행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가격경쟁기반이 취약하고 건축을 문화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경제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양위주로 되고 있으며 심지어 설계를 경쟁입찰방법으로 저가낙찰하는 등 설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위기 형성이 안되어 있으며 최근 응찰가와 설계점수를 연동시키는 방법 등이 있어 다소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개념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설계를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요건으로 보거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불법,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법적하자가 없는 단순설계작업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건축설계발전에 적신호가 된다. 건축설계가 건축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매달려 엄청난 노력과 비용,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것이 건축설계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면 하루빨리 이를 타개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건축설계는 용역 서비스이면서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예술활동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며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5. 건축설계의 개방화에 대한 특실

건축설계의 국제화, 개방화는 어쩔 수 없는 국면이며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설계부문을 개방하고 국제 경쟁 대열에 나서도록 예상되는 이해관계를 몇가지 관점을 살펴보자 한다.

10

개방화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으므로 국내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극소화해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선진기술의 습득, 효율적 경영관리, 국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넓은 활동무대 위에서 국제감각을 익힘으로써 보다 활력있고 세련된 건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선진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경쟁은 설계비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재료, 공법 등이 국제화될 것으로 본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업체가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경쟁력을 상실한 설계사무소는 점차 도태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개방화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극소화하는 대신 국내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설계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고 아울러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만들고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6. 설계의 개방화 대책

건축설계의 개방화에 대한 대책은 현행의 우리나라의 설계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 설계사무소의 전문화

현재 건축사가 자영하는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경우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설계사무소까지 모

든 건축물의 설계를 하고 있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간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설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호텔,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의 건물 종류에 따라 전문화하고 아울러 설계, 구조, 설비, 조경, 인테리어 등 전문영역으로 구분하여 상호 협력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건물별, 업종별 전문설계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기술축적이 어렵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는 설계사무소가 전문화가 되지 못한 실정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회사가 자체의 설계조직으로는 전문화가 어렵고 때로는 전문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인력관리와 경영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 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의 전문업체에게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사무소의 전문화는 자기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건설회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시장개척과 기술축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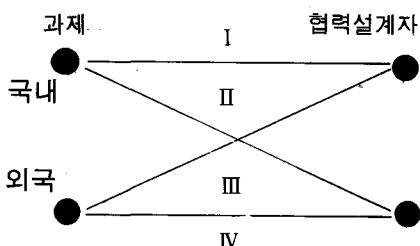
2) 협력설계 체제의 확립

건축설계는 다양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설계와 시공의 업역간 협력, 설계와 구조 설비 등과의 협력, 그리고 국내 또는 외국업체와의 제휴 등 과제별로 가장 효율적인 전문조직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다

11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축가가 좋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가짐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 그리고 전문가의 접목으로 인력과 조직을 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양하게 결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력설계는 설계과제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건축설계 사무소가 구조, 설비, 조경, 토목, 견적 등을 외부 전문 사무소에 하청 또는 협력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설계사무소의 경우 실시 설계까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설계과제가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가를 구분할 수 있고 협력설계자가 국내, 국외에 있는 경우를 조합하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협력설계자의 유무와 그 숫자 그리고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3)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축가가 좋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가짐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홀륭한 건축가를 포함한 홀륭한 전문인재가 양성되고 이를 결집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 그리고 수많은 전

문가의 접목으로 인력과 조직을 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한다.

4) 장애요인의 제거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장애 요인인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고유업무이외의 행정위임 업무의 배제, 기술 공법 자재 등 연관 분야의 정비와 체계화 미비 등 건축설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5) 설계사무소의 각종기계와 장비 현대화

설계사무소에 각종 장비를 현대화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설계의 CAD화와 설계자와 단순제도사의 적절한 배분 등으로 인력관리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한다.

6) 건축설계사무소 경영의 합리화

건축설계사무소의 대부분은 건축사의 자영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력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소의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무실의 크기, 전문화 특성화의 정도와 수준, 독립채산제 운영, 분업화 경영 등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 작업실이나 공방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 안정된 직장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일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설계 보수요율의 합리화, 업무 환경의 개선, 급여 수준의 상향, 후생복지문제 등 모든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7. 결론

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능한 설계 인력을 양성하며 설계조직을 육성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를 가지도록 하여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국제 건설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된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합리적 경영전략을 세움으로써 국내시장을 보호함은 물론 더나아가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역의 구분과 특성화 전문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존공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건축설계용역이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외건설의 경험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와 긴밀하게 상호 협조함으로써 제2의 건설붐이 일고 이것이 국가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되고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12

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능한 설계 인력을 양성하며 설계조직을 육성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를 가지도록 하여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국제 건설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된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합리적 경영전략을 세움으로써 국내시장을 보호함은 물론 더나아가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토막소식

기술자 실태 전면조사

지난 7월 13일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의 서울 전문건설업체 등의 기술인력보유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건설부는 전국 각 시·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건설부는 이를 통해 부도 및 부실업체와 상습적 민원 유발업체에 대해 매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시달했는데, 특히 전문건설업체를 새로 발급해주거나 면허를 갱신해 줄 때는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한 입체적 확인방법으로 건설기술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조사를 마친 서울시 이외의 각 시·도에 대한 면허업체 등 기술자 보유실태를 자체 조사해서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면허받는 등 법정소요기술자를 미확보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건설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술자 미확보업체에 대해 기술자 수급 및 업체여건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